





- ✓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을 노동자가 신청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셨지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직장·가족·개인의 고충 상담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맘·직장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맘·직장대디가 모·부성보호제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통해 밀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들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문의는
  - ①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해야 하는지,
  - ②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③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방법, 사업주 지원금 위주의 내용들로 구성하여 <중소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안내서 행복길잡e>를 제작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안내서는 제목 그대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원활하게 모·부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 CONTENTS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03	육아휴직	06
배우자 출산휴가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8
출산전후휴가	04	사업주 지원금 제도	1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 12주 이내(12주 0일) 또는 36주 이후(35주 1일)의 노동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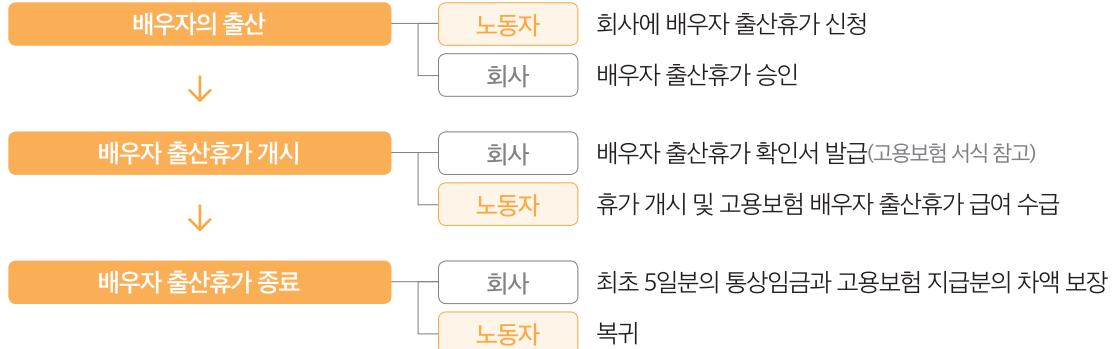
## 배우자 출산휴가

- ✓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의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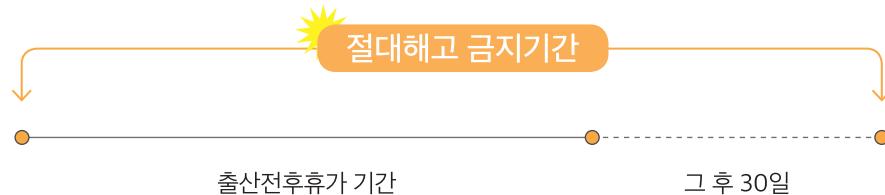
- ✓ 휴가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도



## 출산전후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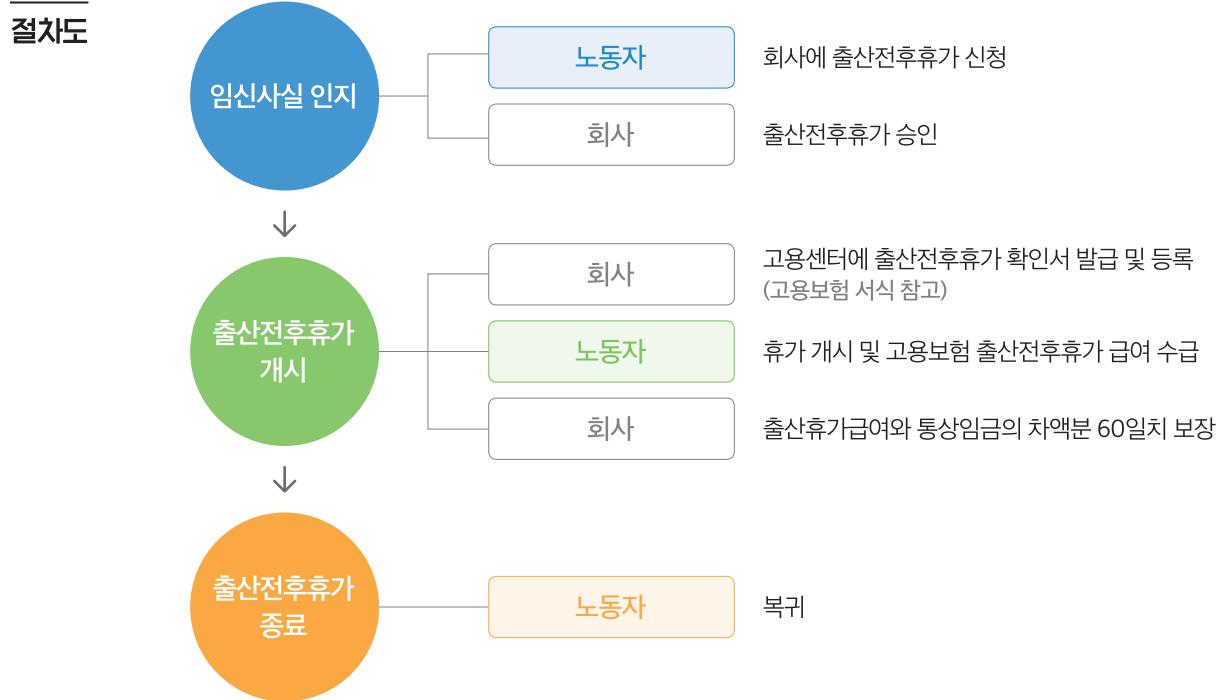
-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다태아 120일)이고,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은 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②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③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 출산전후휴가 도중은 물론이고, 출산전후휴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해당 기간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외 필요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준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	기업 구분	지급 주체 및 금액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30일 200만 원 한도로 지급 (통상임금액의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 한도(다태아 300만 원)로 지급	

4대 보험	출산전후휴가 중 처리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있으면 향후 정산보험료가 부과됨.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보험료 부담 없음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도 평소와 똑같이 납부(납입고지 유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으며 연말(퇴직) 정산 시 근무 월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금 수급 기간이 단축됨. 다만,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 불가





## 육아휴직

-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모든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노동자 본인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노동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외 필요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준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처리

4대 보험	육아휴직 기간 중 처리방법
고용보험	- 휴직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직신고 (회사에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산재보험	- 휴직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직신고 (보험료 부담 없음)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의무.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보험료 납부 <b>하한금액: 2022년 월 19,500원(노동자 부담금 9,750원)</b>
국민연금	- 협의에 따라 납부 또는 납부예외 결정 - 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납부예외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절차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 ✓ 1자녀 당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최대 1년)을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이 차감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 동일한 자녀 기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구분	사용기간	분할사용
육아휴직	최대 1년	2회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2년 - 육아휴직사용 기간	분할사용, 횟수 제한 없음 단, 1회 사용 시 최소 3개월 이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2항**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 ✓ 노동자는 고용센터에서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외 필요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준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절차도**

# 사업주 지원금 제도

## 01 (공통)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02 육아휴직 지원금

- 1 지원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2 지원방법 :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 1인당 지원
- 3 지원요건



1-1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



1-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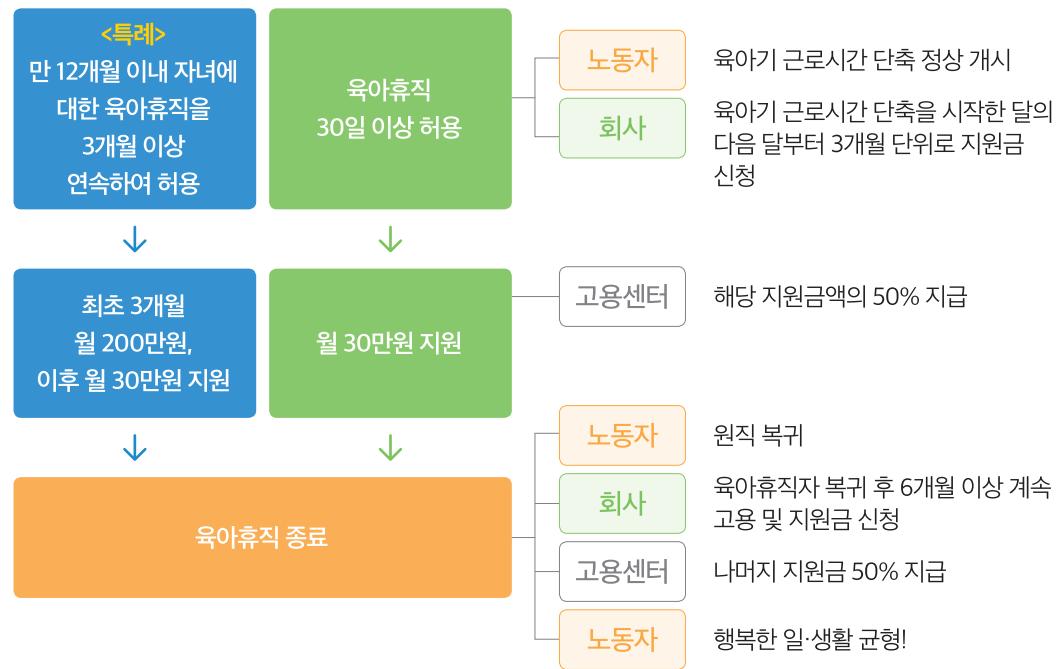


2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4 지급수준

자녀 연령	육아휴직 사용기간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특례)	연속 3개월 이상	200만원 (최초 3개월),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13개월 이후	-	30만원

#### 5 지원금 신청 절차



0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① 지원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② 지원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 1인당 지원
- ③ 지원요건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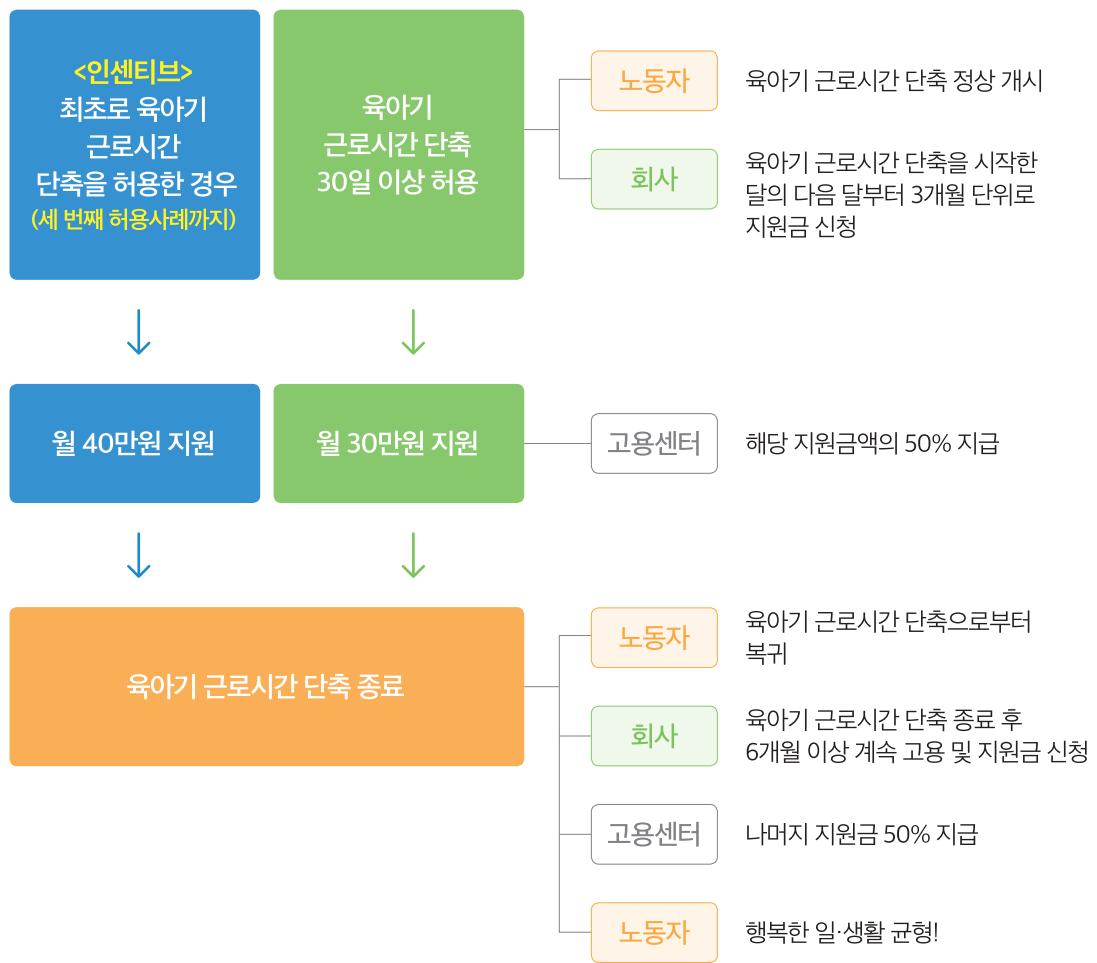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피보험자인 노동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④ 지급수준

자녀 연령	육아휴직 사용기간	1개월 지급액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 합니다.

- 5 지원금 신청 절차



## 04

## 대체인력 지원금

- ① 지원기간 : 인수인계 기간 2개월 및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이 근무한 기간
- ② 지원방법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 1인당 지원
- ③ 지원요건



①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③ 대체인력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④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복귀한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함

#### 4 지급수준

1개월 지급액 (노동자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120만원	80만원

#### 5 지원금 신청 절차



중소기업  
모·부상장  
보호자기도  
  
사용안내서

행복길잡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건대입구역 6번출구)
-  상담전화 02)335-0101 대표전화 02)332-7171
-  FAX 02)335-1070
-  이메일상담 workingmom@hanmail.net
-  카카오채널 검색창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입력